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요건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전년 동월’ 대비 생산량·매출액이 100분의 15이상 감소 등을 요건으로 함. 그러나 코로나19로 다수 기업의 생산량, 매출액이 이미 감소하여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점 대비 재고량 증가 또는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하여 불합리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기준기간)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기준기간 3개월간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신청이 급증하였음에도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속

지원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되, 반복·정형화 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3개월 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의 월평균 시간 대비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규정

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신고기한 개선(안 제31조제3항)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신고 기한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원 명령,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도 30일 이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신고기한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피보험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가 있어 직장어린이집의 실제 수요와 지원요건 등 판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자녀’를 ‘피보험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영유아’로 변경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준달의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로, “전체 피보험자가”를 “직전 3개월 전체 피보험자가”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①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

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란을 “경우 그 사유에 따른 신고기간”으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가.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를 지연되는 경우

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등이 있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

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이하 “피보험자의 영유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녀 수”를 “영유아 수”로, “자녀의”를 “영유아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자녀”를 “영유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생략)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준달의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신설>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로 한다.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기준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2.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
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 ----- 직전 3개월 전체
피보험자가 -----
----- 기간-----

----- .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영유아

⑤ ~ ⑦ (현행과 같음)

년 제 차(월분) ☐ 근로시간 조정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					
연번	성명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지원금신청액	비고
<예시>	홍길동 80. 02. 16	100시간	400,000원	266,666원	
2					
3					
4					
계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를 한 피보험자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③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총근로시간(**전체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 연장근로가 반복·정형화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에 속한 달의 직전 1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를 적습니다.
- ④란은 (월)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가 근무한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⑤란은 ③란 - ④란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⑥란은 ⑤란/③란×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⑦란은 ⑤란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 ⑨란은 ⑦란 × ⑧란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접 수 ↓ (고용센터) 확인·검토 ↓ (고용센터) 결 재 ↓ (청장·지청장) 전산입력 (고용센터)
지 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

(앞쪽)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신청 내용	①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② (월) 휴직근로자 수	명	③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원
	④ 지 원 율	2/3, 1/2	⑤ 지원금신청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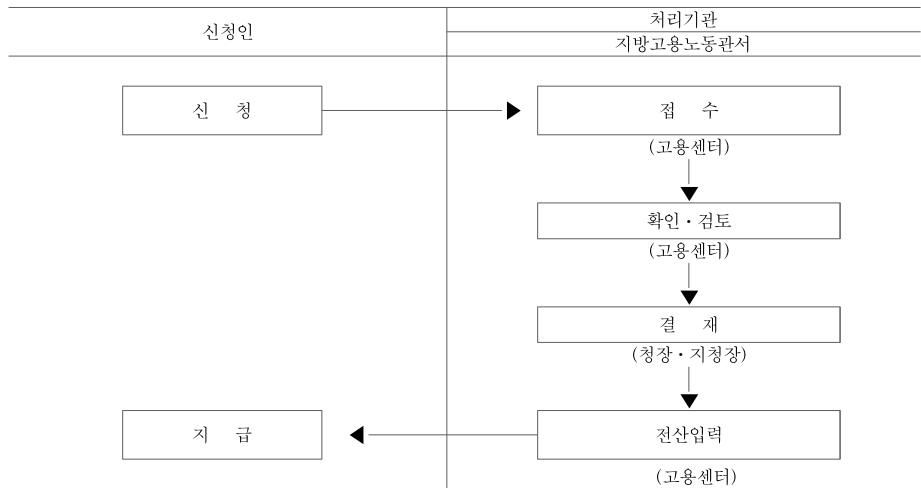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신청 대상 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원
				원
				원
				원
계				원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피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한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 ③란은 ②란의 고용유지조치(휴직)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적습니다.
- ④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밖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 ⑤란은 ③ × ④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 .> <개정후>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조치

-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구 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달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
① 소정근로시간		* 작성생략		
② 연장근로시간 (반복·정형화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③ 총근로시간 (①소정+②연장)		* 작성생략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④ 총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 ~ .. (일)	⑤ (월) 전체 피보험자수	명
	⑥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	명	⑦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⑧ (월) 단축한 근로시간	시간	⑨ 근로시간 단축률	%
	⑩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별 지 기 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회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제활용품)]

(뒤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⑪기 존 시간																			(일) (기존근로시간) (단축시간)	
		단 축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⑪기 존 시간																				
		단 축 시간																				
2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기존근로시간) (단축시간)	
		⑪기 존 시간																				
		단 축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⑪기 존 시간																				
		단 축 시간																				
계		명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⑤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②란은 연장근로가 반복·정형화된 경우(연장근로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경우 또는 특정 요일, 특정 주(週)에 일정 시간동안의 연장근로가 반복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③란은 ①란과 ②란을 합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④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 '20. 3. 1. ~ '20. 3. 31, 22일)
- ⑤란은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자는 제외합니다.
- ⑥란은 (월)의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대상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⑦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1개월간) 동안 피보험자별 근무할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⑧란은 ③란 - ⑦란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⑨란은 ⑧/③란×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⑩란은 ⑧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 ⑪란에는 각 일자별 소정근로시간 및 반복·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의 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